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실내에서 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 의견수렴을 정함(안 제3조 ~ 제5조)
- 다. 놀이터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 제13조)
- 라.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3년 당초예산에 1.8억원 반영하였음
- 다. 합 의 : 가족복지과 드림스타트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09. 07.~09. 17.) 결과, 의견 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것

제3조(명칭 및 위치)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군수가 고시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인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놀이를 통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제공. 다만, 놀이터의 특성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평창군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성인 인솔자

3. 그 밖에 대상자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1일)

3. 추석(음력 8월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군수는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 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하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6조(협약체결) 군수는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조건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군수는 놀이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수탁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관련조례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조 례 안 :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놀이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180,300	198,330	218,163	239,979	263,976
세출	공공형 실내놀이터(평창)	70,000	77,000	84,700	93,170	102,487
	공공형 실내놀이터(진부)	110,300	121,330	133,463	146,809	161,489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전 해 순
연락처	(033) 330 - 212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자체 수입	소 계	180,300	198,330	218,163	239,979	263,976	1,100,748
	지방세	180,300	198,330	218,163	239,979	263,976	1,100,748
	세외수입						